

대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다276291 판결 [계약금 배액상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다27629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26 선고 2022나7326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

담당변호사 김화철, 박상철, 이경인, 서주희, 원의림

피고, 피상고인 1. B 주식회사

대표자 사내이사 C

2. D 주식회사

대표이사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정도, 김동규
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26. 선고 2022나7326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23. 1. 12.

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